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1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1.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황충연)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하며, 2023년 기준 16만 6,500여 명으로 청소년 인구(6~17세) 대비 약 3.0%로 추정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의 수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며, 정

서적 안정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용적 동물 복지와 청소년 교육정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정부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주도로 일괄 정비를 추진 중인 9개 법률의 정부 제출안 중 하나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